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236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9. 15.(월)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2.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3.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4.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8.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12.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3.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4.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15.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17.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8.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9.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0.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21.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2.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23.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봉투 기준·공급체계를 개선하며, 조례 문구와 부서명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3조)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안 제7조)

라. 종량제봉투 공급 규정 정비(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에 위한 노력)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등 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환경시책 홍보 활동
3.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사업
4.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활용 사업
5.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6.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견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제3호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활용품 중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정된”을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청소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 5.깨진 유리, 못 등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 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절단되지 아니한 폐섬유·폐호스 등)에 대하여 절단(길이 2미터 이하) 등 별도 조치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판매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본을 보관”을 “공급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대금 수납 확인 후 쓰레기봉투를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후”를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대형폐기물처리”를 “대형폐기물처리 및 음식물납부필증”으로 한다.

별표 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환경보호과 및 읍면사무소” 를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로 한다.

종량제 봉투 제작

매 립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ℓ) - 일 반 매 립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소 각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ℓ) - 일 반 소 각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	---

재
사
용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ℓ)
- 재 사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공
공
용
용

성주군 문장
종량제 봉투(50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성 주 군 수



문의처 :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TEL 930 - 619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 <u>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u> ----- ----- -----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신 설>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등 견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환경시책 홍보 활동
3.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사업
4.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활용 사업
5.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6.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견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물 또는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3. (생략)

<신설>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제3호의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활용품 중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의 지원은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

1.-----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

2. 3. (현행과 같음)

4.청소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 ③ (생 략)

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5.깨진 유리, 못 등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우려가 있는 생활폐기물(절단되지 아니한 폐섬유·폐호스 등)에 대하여 절단(길이 2미터 이하) 등 별도 조치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생략)

⑤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판매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정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공급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대금 수납 확인 후 쓰레기봉투를 공급-----
-----.

⑥ -----

-----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

제21조(권한의 위임) -----

-----.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처리 및 음식물납부 필증 -----

붙임**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종량제봉투의 검수

- 구입시에는 검수 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

-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감량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

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 사업자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중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중전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제11조, 제12조의2로 하며, 중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68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사업장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제16조의10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kg)

[illegible]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kg/일)	연 간 처 리 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생활폐기물중</u> <u>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u> <u>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u> 필요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음식물류 폐</u> <u>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u> <u>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u> <u>진</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 품의 <u>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u> <u>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u> <u>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u> 등을 말한다.	1.-----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소비과정</u> 등에서 <u>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u> <u>지는 음식물</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u>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u> <u>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u>
<신설>	제4조(<u>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u> <u>를 위한 노력</u>) ①군수는 <u>음식물류</u> <u>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u> <u>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u> <u>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u> ②군수는 <u>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u> <u>원별 발생억제 방안</u> 등을 주민에게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3. (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 사업자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

-----.

1. -----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군수는 <u>제5조</u> 및 <u>제6조</u>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u>제7조</u>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u>제9조</u> ~ <u>제14조</u> (생략) <u>제15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u>법68조</u>에 따른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6조</u> 및 <u>제7조</u>----- ----- ----- --- <u>제8조</u>-----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10조</u> ~ <u>제15조</u>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u>제16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u>법 제68조</u>----- -----. ② (현행과 같음)
--	--

붙임**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안 제48조)

-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임시회의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규칙안 : 붙임

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⑦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 여 일반에게 공개한다.</u> <u>⑦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 여 임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u>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 이유

공공분야에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등의 예방, 금지조치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안 제3조, 제4조)
-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5조)
-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6조)
-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
- 바. 피해 직원 보호·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8조, 제9조)
- 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안 제10조)
- 아. 비밀유지 및 허위신고 조치 (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35173(2025.7.15.)]
 -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기획예산실-8119(2025.7.14.)]
 - 3) 입 법 예 고 : 2025. 7. 17. ~ 8. 6. (2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추가(안 제6조)
- 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0조)
- 다.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안 제41조)
-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4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5. 7. 17. ~ 8. 6. (20일간)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5108(2025.7.2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의 제목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를 “선정 대리인 제도”로 한다.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4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청구인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

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u>
제9장 <u>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u>	제9장 <u>선정 대리인 제도</u>
<u><신설></u>	<u>제33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
<u><신설></u>	<u>제34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u> ① <u>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u> ② <u>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u>

<신 설>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 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

서 알게 된 청구인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 제40조 (생략)

제36조 ~ 제43조 (현행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와 같음)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하고, 규칙에 있는 내용 일부를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내용 반영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안 제6조 제1항 제2호)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 추가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1호)
- 규칙 내용 일부 이관(별표 포함)(안 제6조 제3항)
- 이관한 규칙 별표 서식에 공영주차장 감면 내용을 반영(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376(2025.6.24.)]
-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성주국민체육센터”를 각각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에 따른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표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증빙서류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50%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표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50%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 성주군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표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유공납세자	100%	유공납세자 증
성실납세자	50%	성실납세자 증

○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표(유공납세자에 한함)

지원항목	지원혜택	증빙서류
가점부여(선정시)	10점 정도	유공납세자 증
이자차액보전금	대출액지원 상향조정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성실 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 ----- -----.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 성 자연휴양림, <u>성주국민체육</u> <u>센터</u> 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나. ----- ----- <u>성주국민</u> <u>체육센터, 공영주차장</u>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지원	2.-----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 성 자연휴양림, <u>성주국민체육</u> <u>센터</u> 에 대한 사용료 감면	다. ----- ----- <u>성주국민</u> <u>체육센터, 공영주차장</u>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u> <u>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u> <u>3의 감면율에 따른다.</u>

(관련조례 : 성주군 주차장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생략)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②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 <u>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성주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24. 12. 5.]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547호, 2024. 12. 5., 일부개정]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6.11.1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개정 2016.11.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6.11.10., 2024.12.5.>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개정 2016.11.10.>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24.12.5.>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2. 4. 20, 2016.11.10., 2024.12.5.》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신설 2012. 4. 20, 개정 2016.11.10., 2024.12.5.》
4.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12.5.>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인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12.5.>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용 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 보호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당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성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375(2025.6.24.)]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청구인 ·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삭 제>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u>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u> <u>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u> 2. <u>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u> <u>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u> <u>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u> <u>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u> <u>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u>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u> <u>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u> <u>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u> <u>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	--

□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 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채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7. 12. 29.]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용 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423(2025.6.25.)]
-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①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산양육자”라고 한다)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일부터 3년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 경우 첫째 자녀 출산 후 감면 기간 중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감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 종료일이 가장 늦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호 외의 승용자동차(배기량 3,000cc 이하)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생 자녀와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없을 것
 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과 자녀의 수가 확인될 것
- ③ 출산양육자가 해당 자녀의 출산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 및 제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 그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2.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 분할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
 3.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 연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한 경우 : 그 연세액의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연도 1월 1일
- ④ 출산양육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1.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경감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출산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출산양육자가 성주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산양육자에게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 경우, 성주군수는 해당 자동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 등 자동차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 신설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정한다.

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2027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조의2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①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출산양육자”라고 한
다)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소유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
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일부터 3년간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 경우 첫째 자녀 출산 후 감면 기간 중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감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 종료일이 가장 늦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호 외의 승용자동차(배기량 3,000cc 이하)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생 자녀와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없을 것

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과 자녀의 수가 확인될 것

③ 출산양육자가 해당 자녀의 출산 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제1기분 및 제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 그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2.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 분할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달 1일

3.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 연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4.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한 경우 : 그 연세액의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 연도 1월 1일

④ 출산양육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동 차세를 감면한다.

1.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경감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출산양육자의 사망으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출산양육자가 성주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산양육자에게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한 경우, 성주군수는 해당 자동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 등 자동차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정유산 또는 국가 및 시·도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5년</u>	<u>2027</u> <u>년 12월 31일</u> -----
--	---------------------------------------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을·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제3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산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

② 세정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다. 이 경우 세정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5월까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 12. 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계 산 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5. 7. 24., 2016. 12. 27.>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5. 6.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 8. 4.>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2020. 2. 11., 2024. 2. 20.>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소속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373(2025.6.24.)]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7189(2025.6.26.)]

3) 입 법 예 고 : 2025. 7. 15. ~ 2025. 8. 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민원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교통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u>자치행정과장, 민원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교통과장</u> 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총무새마을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u> -----.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12. 31.]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550호, 2024. 12. 5., 일부개정]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 재무과, 민원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둔다.<개정 2024.12.5.>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로 내용 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 가. 사 무 명 :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및 관리
- 나.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창의문화교류센터 3층)
- 다. 시설현황 : 연면적 552.55㎡ / 상영관 2개(98석, 장애인석 2석 포함)
- 라. 위탁기간 : 2025. 11. 22. ~ 2028. 11. 21. (3년간)
- 마. 위탁방법 : 재계약
- 바. 현 수탁기관 :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대표 정민화)

3. 주요 위탁조건

- 가. 관람료 사전 승인 및 상영작 구성 협의
- 나. 성주군민 우선 채용
- 다. 순수익 배분(군 40% : 수탁자 60%)
- 라. 시설·장비 원상복구 책임
- 마. 분기별 실적 보고 및 연간 성과보고서 제출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가. 위탁운영 관련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경비로 충당
- 나.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가. 공공성 및 안정성 : 군민 생활권 문화향유권 보장, 안정적 서비스 공급 가능
- 나. 전문성 : 전문 영화관 운영 경험과 인력 확보
- 다. 경제성 : 군 직영 대비 효율성·경제성 우수, 순수익 일부 군 재정 환원
- 라. 성과관리 및 투명성 : 관람객 수, 상영편수 등 성과 측정 가능,
분기별 보고 등 관리 용이
- 마. 기타 : 성과평가 결과('25. 8월, 84점) 재계약 적정 판정
- 바. 종합판단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조례 제5조 검토기준 충족)

6. 성과평가 결과

- 가. 평가일시 : 2025. 8. 12.
- 나. 평가방법 : 정량(50점) + 정성(50점)
- 다. 평가내용 : 정량(관람객실적, 상영실적, 재무실적등)
정성(운영방침 부합성, 콘텐츠 다양성, 지역연계성등)
- 라. 평균점수 : 84점 (적정 기준 70점 이상)
- 마. 종합판단 : 재계약 적정
- 바. 주요 성과
 - 1) 3년간 누적 관람객 약 7만 명 → 군민 문화접근성 확대
 - 2) 2024년 흑자 전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3) 주민참여 및 지역축제·행사 연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 개선 권고사항
 - 1) 평일·비수기 관람객 유치 강화
 - 2) 독립·예술영화 등 지역특화 콘텐츠 확대(연 20편 이상)
 - 3) 어르신·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 4) 주민참여 프로그램 정례화(연 4회 이상)

7. 향후 추진계획

- 가. 2025. 11월 : 재계약 체결 및 운영 개시(11. 22.)

【붙임 1】

【관 련 법 규】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

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0., 2015.11.12>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0., 2015.11.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1. 10.>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16.11.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5.11.12, 2016.11.10>

⑥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1.12>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연평균 세출 순증가액 1억원 미만

라. 작성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2025년 2월 11일 베트남 꽝남성·타이빈성·박깐성과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베트남 다낭시(꽝남성+다낭시), 베트남 흥옌성(타이빈성+흥옌성), 베트남 타이응우옌성(박깐성+타이응우옌성)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국가(지자체)간 협력 방안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유치국가	농가수 (호)	유치인원 (명)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2017	필리핀 (1개시)	11	21	-	상반기 9명, 하반기 12명
2018	필리핀 (1개시)	7	11	-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
2019	필리핀 (1개시)	7	15	-	상반기 7명, 하반기 8명
2022	필리핀 (1개시)	62	124	-	상반기만 추진
2023	필리핀 (2개시)	277	531	328%	상반기만 추진
2024	필리핀 (4개시) 라오스 (1개주)	514	932	75%	상반기 445호/837명 하반기 69호/95명
2025	필리핀 (3개시) 라오스 (3개주) 베트남 (1개성)	927	1,846	98%	상반기 697호/1,440명 하반기 230호/406명

4. 기타사항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 결과 및 경미한 변경 사항(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시행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및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나. 참고자료

- 1) 비용추계서
- 2)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안)
- 3)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참고 1]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참고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일반보전금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예상) 인원수 등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인건비	82,063	82,063	82,063	82,063	82,063	410,315
	○ 일반운영비	330,200	363,220	399,542	439,496	483,446	2,015,904
	○ 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일반보전금	78,400	86,240	94,864	104,350	114,785	478,639
	○ 홍보비	2,970	2,970	2,970	2,970	2,970	14,850
	소계(b)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 총 비용(a-b)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5. 부대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예상)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22년 124명 → '23년 531명 → '24년 932명 → '25년 1,846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

6. 작성자

- 농정과 농촌인력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5년)

(단위 : 천원)

항 목	세 부 내 용	산 출 내 역	예산액
합 계			523,633
인건비	소 계		82,063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2,208.9천원 × 1명 × 9개월	19,880
	언어소통도우미 인건비	2,220.8천원 × 4명 × 7개월	62,183
일반운영비	소 계		330,200
	버스 임차료	1,000,000원 × 50대 × 3회	150,000
	현수막 제작	70,000원 × 40부	2,800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5,000원 × 2,000부	10,000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40,000원 × 1,800명	72,000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30,000원 × 1,800명	54,000
	해외 현지 통역비	100,000원 × 50회	5,000
	계절근로자 편의물품 구입	5,000원 × 1,800명	9,000
	계절근로자 임시숙소 임차비	50,000원 × 20명 × 5일	5,000
	외빈초청 기념품 제작	100,000원 × 20명	2,000
	고용주교육 및 입국설명회	3,000,000원 × 2회	6,000
	계절근로자관리차량임차	1,000,000원 × 12개월	12,000
	계절근로자관리차량유류비	200,000원 × 12회	2,400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1,000,000원 × 3명 × 10회	30,000
일반보전금	소 계		78,400
	민간인국외여비(통역사)	1,000,000원 × 5명 × 2회	10,000
	외빈 숙박비	150,000원 × 5명 × 3일 × 4회	9,000
	외빈 식비	50,000원×5명×3식×4일×4회	12,000
	계절근로자 급식 제공	9,000원 × 1,800명 × 2회	32,400
	계절근로자 상해치료비	1,000,000원 × 15명	15,000
공기관 등에대 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소 계		2,970
	프로그램 홍보 신문광고개제	330,000원 × 9회	2,970

[참고 3]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안) - 별첨

[참고 4]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 베트남 다낭시



- 면 적 : 11,723km²
- 농림지역 : 8,079km²
- 인 구 : 1,269천명('24년 기준)
- 행정구역 : 45개 구, 11개 자치구
- 기 타
 - '25년 7월 1일 꽝남성과 통합됨

□ 베트남 홍옌성



- 면 적 : 2,514.81km²
- 농림지역 : 1,877.37km²
- 인 구 : 3,567천명('25년 기준)
- 행정구역 : 11개 구, 93개 읍면
- 기 타
 - '25년 7월 1일 타이빈성과 통합됨

□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 면 적 : 8,375.21km²
- 농림지역 : 304km²
- 인 구 : 1,799천명('25년 기준)
- 행정구역 : 15개 구, 77개 읍면
- 기 타
 - '25년 7월 1일 박간성과 통합됨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 1) 법 제12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2조제1항)
- 2)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5항(안 제11조제1항)

나. 원인자 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부기간 신설(안 제14조제2항)

- 1)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588(2025.5.29.)]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025(2025.5.26.)]
- 3) 입법예고 : 2025. 6. 10. ~ 2025. 6. 30.(20일간)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 ----- ----- ----- -----.
제11조(가로수 조성협약)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한다.	제11조(가로수 조성협약)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 ----- ----- ----- -----.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 -----.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	제14조(부담금의징수) ① (현행 제목

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휴양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규정과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는데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나.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명칭 통일
- 다. 시설범위를 적용범위로 변경하여 휴양림 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
- 라. 제10조(입장 제한 등) 폐지
- 마.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예약 관리 강화 조항 신설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안 제12조)
 - 관리자 예약(안 제13조)
 - 매매·교환 등 금지(안 제14조)
 - 손해배상(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5. 6. 9. ~ 2025. 6. 28. (20일간)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025(2025.5.26.)]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6475(2025.5.22.)]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군수”를 “이하“군수””로,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을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한다”를 “조성·운영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 홍수, 태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이”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를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잘”로,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을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불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위하여 직접**”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에 의하여**”를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입장료		무료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제1휴양관	50.3㎡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 (8인기준)	1동/1일	150,000	9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29.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36.2㎡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43.1㎡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 퇴실기준일 해당 객실의 입실객이 없을 경우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여 연장사용 가능하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1의2] <개정 2019. 10. 10., 2020. 10. 5., 2021. 11. 11., 2024. 6. 3.>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민	30%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50%	

비고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을 말한다.

차.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봉사자를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u> ----- ----- -----.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성주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u>)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u>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u> (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u>조성한다</u> .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 <u>이하“군수”</u> ----- ----- ----- <u>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u> ----- ----- - <u>조성·운영 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의 범위) <u>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	제3조(적용 범위) <u>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u> .
1. <u>숲속의 집</u>	
2. <u>숲속휴양관</u>	
3. <u>제2휴양관</u>	
4. <u>세미나실</u>	
제4조(휴관일 등) ① (생략)	제4조(휴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 -----.

1. · 2. (생략)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 6.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생략)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생략)

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1. · 2. (현행과 같음)

3. --- 산사태, 홍수, 태풍 -----

4. ~ 6. (현행과 같음)

③ -----

-----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

-.

1. ---- 제2호-----

2.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시간 등) <삭 제>

① 숙박시설-----

-----.

1. -----
----- 전까지

2. (현행과 같음)

<삭 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 (생략)

제6조(시설사용료) ① (생략)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략)

③ (생략)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잘
-----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
나들e)에 -----
-----.

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불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위하여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약금)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

는 경우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
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
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
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
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
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
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
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
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
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
청은 취소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
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 e)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 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신 설>

<신 설>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반기별 1회)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

<u>제13조</u> (생략)	<u>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u> <u>제16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	--

□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관련 공문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관련 조례 개정 권고

"날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

1.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3414(2022. 9. 6.)호 및 3602(2022. 9. 20.)호 관련입니다.
2. 산림청은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 포함)" 감사결과에 후속조치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9.6~9.14)를 거쳐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감사원 지적사항(요약) >

공립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예약을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절차를 받게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 필요

3. 이에 공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오니 <붙임1>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각 시군별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산림청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 등을 위하여 <붙임2> 서식을 2022. 9.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1부.
2. 공립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계획(서식) 1부. 끝.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성주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법령 :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
 -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필요성
 -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입양률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함.

다. 사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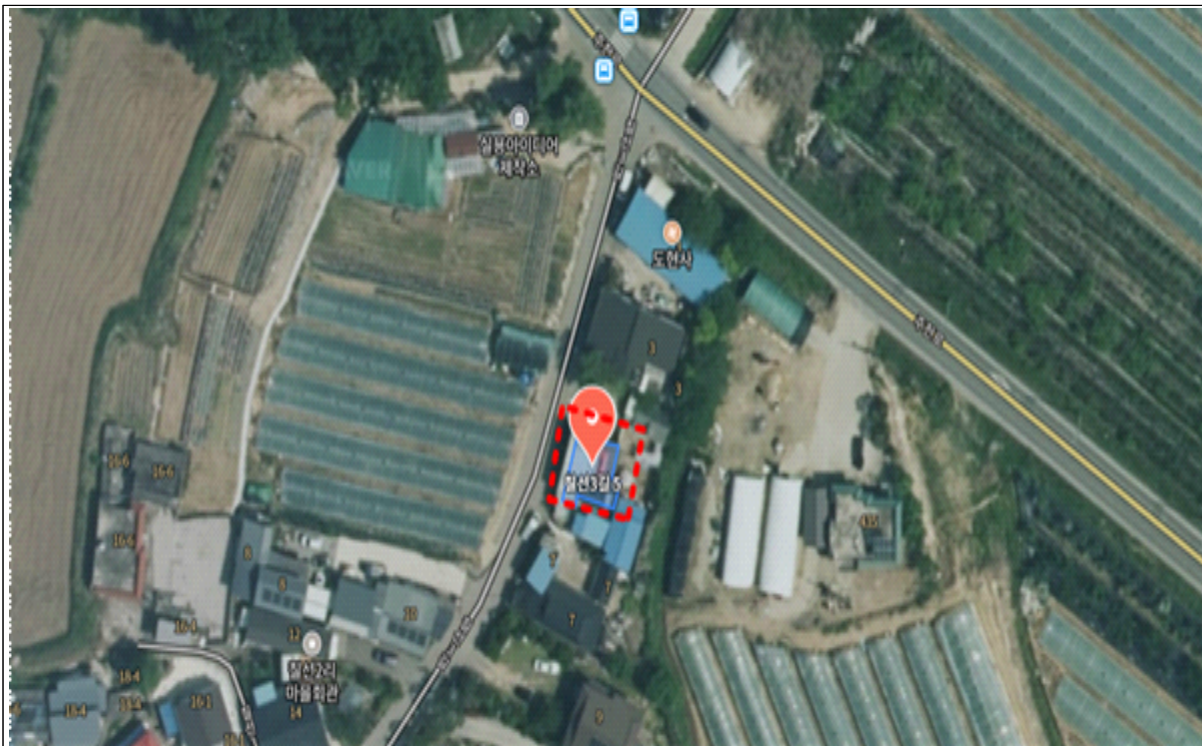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및 동물 입양 홍보 및 관리
-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기타 성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 면 적 : 1,551m²(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개인시설 임대 : 사진자료 별첨



- 시 설 명 : 성주군 입양지원센터(성주군 초전면 칠선3길 5)
- 면 적 : 82.4m²(용도 : 단독주택) ※개인시설 임대 : 사진자료 별첨



○ 사진자료(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시설외부



보호실(대형견)



보호실(소형견)



격리실



진료실



사료보관실

○ 사진자료(성주군 입양지원센터)



시설외부



시설외부



보호실(소형견)



격리실



입양상담실



사료보관실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탁기간 : 2년(2026. 1. 1. ~ 2027. 12. 31.)

나.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현 수탁기관 : (주)독케어(대표 박명석)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금287,800천원(도 20,700, 군 267,100)

- 보호센터 운영 : 189,000천원(도 8,700천원, 군 180,300천원)

- 입양센터 운영 : 98,800천원(도 12,000천원, 군 86,800천원)

나. 산출근거

○ 동물보호센터 운영 : 189,000천원(도 8,700천원, 군 180,300천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합계			189,000	
인건비	인 건 비	·근로자 2,800천원/월 × 2명 × 12월	67,200	
사료구입	사료구입	·45천원(20kg) × 100포/월 × 12월	54,000	
동물보호 센터운영	통 신 비	·스마트폰, 인터넷 등 150천원/월 × 12월	1,800	
	렌 탈 비	·복사기 등 렌탈 500천원/월 × 12월	6,000	
	임 대 료	·보호센터 임대 1,400천원/월 × 12월	16,800	
	공 과 금	·전기, 수도 등 800천원/월 × 12월	9,600	
	관 리 비	·보호센터 운영 관리용품 등 구입	13,600	
	소모품비	·보호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20,000	

○ 입양지원센터 운영 : 98,800천원(도 12,000천원, 군 86,800천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합계			98,800	
인건비	인 건 비	·근로자 2,800천원/월 × 2명 × 12월	67,200	
사료구입	사료구입	·45천원(20kg) × 10포/월 × 12월	5,400	
입양지원 센터운영	통 신 비	·스마트폰, 인터넷 등 100천원/월 × 12월	1,200	
	렌 탈 비	·건조기 등 렌탈 200천원/월 × 12월	2,400	
	임 대 료	·입양지원센터 임대 1,000천원/월 × 12월	12,000	
	공 과 금	·전기, 수도 등 300천원/월 × 12월	3,600	
	소모품비	·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7,000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가. 대체 가능성 :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포획·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보호시설이 현재 군에는 없으므로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 나. 공공성 및 안정성 : 민간위탁 방법으로 포획·관리·입양 절차까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 되는 것으로 검토됨.
- 다. 경제성 : 군직영 동물보호시설이 없는 실정에서 민간위탁업체의 운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으로 검토됨.
- 라. 전문성 : 현재 6년 연속 위탁하는 법인으로써 운영인력들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 포획·관리에 있어 동물들과의 유대감이 매우 높으며, 특히 최근 입양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매우 높은것으로 검토됨.
-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포획·입소, 입양, 안락사, 1일평균보호수 등 관리의 수치화를 적용하고 있어 성과 측정 용이한 것으로 검토됨.
- 바. 종합판단 : 성주군의 유기동물 발생량은 연간 450두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입양률(200건 이상)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 위탁 재위탁으로 적정함(조례 제5조 검토기준 충족)

6. 성과평가 결과

- 가. 평가일시 : 2025. 9. 2.(화)
- 나. 평가방법 : 동물 보호관리입양 실적(80점), 반려동물 문화입양 홍보 및 봉사활동실적(20점)
- 다. 평가점수 : 80점(적정 기준 70점 이상)
- 라. 위탁단체 : 독케어(대표 : 박명석) ※ '20 ~ '25년 계속 위탁 운영
- 마. 주요성과
- 관내 발생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보호
 - 일 평균 약 150~160두 정도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
 -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실적

2023년				2024년				비고
입소	입양	안락사	보호/일	입소	입양	안락사	보호/일	
341	201	66	200	437	214	110	180	

※ 유기동물 발생량 : 도내 6위, 군부 1위(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자료)

※ 유기동물 입양실적 : 도내 3위, 군부 1위(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자료)

- 동물관련 봉사단체 프로그램 운영

- '25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홍보 부스 운영(4일, 4,000명 이용)
- 자원봉사자, 명인고, 기타단체 등 봉사활동(10회)

- 바. 종합판단 : 재위탁 적정

○ 동물등록 관리대장

2025년 유기동물 보호 관리대상

※ 등록: 221주 - 입양: 66주 - 안락사: 21주 ※ 발령보통: 166주

연월	종류	성별	연령	종류	발령번호	공고번호	공고기간	등록일자	의뢰종류	처리일자	발령담당기관(주)	생선일	주소	비고
월	221년													
1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7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21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2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7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20	2025-01-10-2025-01-17	2025-01-10	안락사	2025-03-31	-	-	-
3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7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19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4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7	월광동 한가1길	447521202500018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5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5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17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6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52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16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7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15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8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52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14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9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8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13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10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8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12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11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52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11	2025-01-10-2025-01-17	2025-01-10	-	-	-	-	-
12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52	전남권 연호로 71-13	447521202500029	2025-01-13-2025-01-20	2025-01-13	-	-	-	-	-
13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7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18	2025-01-13-2025-01-20	2025-01-13	-	-	-	-	-
14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7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27	2025-01-13-2025-01-20	2025-01-13	-	-	-	-	-
15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52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28	2025-01-13-2025-01-20	2025-01-13	-	-	-	-	-
16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6	전남권 연호로 71-13	447521202500024	2025-01-13-2025-01-20	2025-01-13	안락사	2025-03-31	-	-	-
17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7	전남권 연호로 522	447521202500022	2025-01-13-2025-01-20	2025-01-13	-	-	-	-	-
18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0.8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17	2025-01-18-2025-01-27	2025-01-18	-	-	-	-	-
19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0.8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16	2025-01-18-2025-01-27	2025-01-18	입양	2025-02-10	월광동	220916	월광동 월광동 동물보호소
20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0.8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15	2025-01-18-2025-01-27	2025-01-18	입양	2025-02-08	신원리	901115	신원리 동물보호소
21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0.8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13	2025-01-18-2025-01-27	2025-01-18	-	-	-	-	-
22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0.8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12	2025-01-18-2025-01-27	2025-01-18	-	-	-	-	-
23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2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11	2025-01-18-2025-01-27	2025-01-18	안락사	2025-07-06	-	-	-
24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20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45	2025-01-19-2025-01-27	2025-01-19	-	-	-	-	-
25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8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44	2025-01-19-2025-01-27	2025-01-19	-	-	-	-	-
26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7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3	2025-01-19-2025-01-27	2025-01-19	입양	2025-02-01	신원리	590317	신원리 동물보호소
27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3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2	2025-01-19-2025-01-27	2025-01-19	안락사	2025-03-31	-	-	-
28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3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41	2025-01-19-2025-01-27	2025-01-19	-	-	-	-	-
29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3	충천동 월곡리 마을회관 앞	447521202500040	2025-01-19-2025-01-27	2025-01-19	안락사	2025-03-31	-	-	-
30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65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39	2025-01-19-2025-01-27	2025-01-19	입양	2025-03-06	신원리	630205	신원리 동물보호소
31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5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38	2025-01-19-2025-01-27	2025-01-19	입양	2025-02-06	신원리	789033	신원리 동물보호소
32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4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37	2025-01-20-2025-01-27	2025-01-20	입양	2025-06-03	신원리	986209	신원리 동물보호소
33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9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6	2025-01-20-2025-01-27	2025-01-20	입양	2025-02-01	신원리	590317	신원리 동물보호소
34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0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8	2025-01-21-2025-01-31	2025-01-21	-	-	-	-	-
35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20	월광동 대원리 마을회관 인근	447521202500051	2025-01-22-2025-01-31	2025-01-22	-	-	-	-	-
36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0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50	2025-01-22-2025-01-31	2025-01-22	-	-	-	-	-
37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3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9	2025-01-22-2025-01-31	2025-01-22	-	-	-	-	-
38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20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8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39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20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47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40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7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65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41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1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62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42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3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61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43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5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60	2025-01-24-2025-01-31	2025-01-24	입양	2025-06-09	월광동	450213	월광동 동물보호소
44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수컷	17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59	2025-01-24-2025-01-31	2025-01-24	안락사	2025-03-31	-	-	-
45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11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58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46	지	견종	종교 동물 형상제	암컷	9	신원리 연호로 522	447521202500057	2025-01-24-2025-01-31	2025-01-24	-	-	-	-	-

○ 개체관리카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447521202500036					
2. 구조정보	신고일	2025-01-18		구조일	2025-01-18	
	신고자	유수경		주소(전화번호)	010-2949-6699	
	구조자	성주유기동물보호센터		구조장소	대형이 마을회관 인근	
3. 동물정보	속종	개	몸종	믹스견	성별	암컷
	나이	0살	중성화	N	체중	0.8
	동물등록번호		특징	귀염둥이		

4. 보호동물사진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20250118	황보길	
20250208	황보길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2025-02-10	[] 반환	[■] 분양	[] 기증	이름	임정애	상년월일	72/03/16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칠	연락처	010-7585-7779
				동물등록번호			
		[] 과사		사유		확인자	
		[] 안락사		사유		확인자	
				안락 사용기록	= 별도작성 및 첨부 가능		
	[]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그 밖의 방법						

7. 그 밖의 사항

○ 입양등록 관리대장

2025년 유기동물 보호 관리대장(입양)													
번호	종종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번호	보호번호	보호기간	입양일자	최종일자	최종일자	입양인명(가족)	주주소	비고
1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6	447521202500036	2025-01-18~2025-01-27	2025-01-18	입양	2025-02-10	정영희	729116	정주군 동물보호팀3일
2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5	447521202500035	2025-01-18~2025-01-27	2025-01-18	입양	2025-02-08	김선익	901115	구미시 동물보호팀
3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4	447521202500034	2025-01-19~2025-01-27	2025-01-19	입양	2025-02-01	김종	590917	전라남도 동물보호팀
4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3	447521202500033	2025-01-19~2025-01-27	2025-01-19	입양	2025-02-06	이성진	620925	대전광역시 동구 동물보호팀
5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2	447521202500032	2025-01-19~2025-01-27	2025-01-19	입양	2025-02-06	김정현	780903	부산광역시 동구 동물보호팀
6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1	447521202500031	2025-01-20~2025-01-27	2025-01-20	입양	2025-02-03	이민철	980929	정주군 동물보호팀3일
7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30	447521202500030	2025-01-20~2025-01-27	2025-01-20	입양	2025-02-01	김종	590917	전라남도 동물보호팀
8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9	447521202500029	2025-01-24~2025-01-31	2025-01-24	입양	2025-02-08	정주군	450113	정주군 동물보호팀
9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8	447521202500028	2025-02-01~2025-02-10	2025-02-01	입양	2025-02-11	정주군	500004	정주군 동물보호팀
10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7	447521202500027	2025-02-04~2025-02-11	2025-02-04	입양	2025-02-23	정주군	700603	정주군 동물보호팀
11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6	447521202500026	2025-02-04~2025-02-11	2025-02-04	입양	2025-02-13	이성진	451025	정주군 동물보호팀
12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5	447521202500025	2025-02-04~2025-02-11	2025-02-04	입양	2025-02-02	정주군	610615	정주군 동물보호팀
13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4	447521202500024	2025-02-11~2025-02-18	2025-02-11	입양	2025-02-07	정주군	560808	정주군 동물보호팀
14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3	447521202500023	2025-02-18~2025-02-25	2025-02-18	입양	2025-02-02	정주군	690207	정주군 동물보호팀
15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2	447521202500022	2025-02-18~2025-02-25	2025-02-18	입양	2025-02-02	정주군	550813	정주군 동물보호팀
16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1	447521202500021	2025-02-28~2025-03-05	2025-02-28	입양	2025-03-18	이성진	620109	정주군 동물보호팀
17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20	44752120250002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4	정주군	710204	정주군 동물보호팀
18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9	447521202500019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941025	정주군 동물보호팀
19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8	447521202500018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700520	정주군 동물보호팀
20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7	447521202500017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80309	정주군 동물보호팀
21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6	447521202500016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950802	정주군 동물보호팀
22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5	447521202500015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3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4	447521202500014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4	개	가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3	447521202500013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5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2	447521202500012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6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1	447521202500011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7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10	44752120250001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8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9	447521202500009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29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8	447521202500008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0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7	447521202500007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1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6	447521202500006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2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5	447521202500005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3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4	447521202500004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4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3	447521202500003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5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2	447521202500002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6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1	447521202500001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7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8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39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0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1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2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3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4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5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46	개	박스견	암컷	2018.08.08	447521202500000	447521202500000	2025-03-05~2025-03-12	2025-03-05	입양	2025-03-28	정주군	570411	정주군 동물보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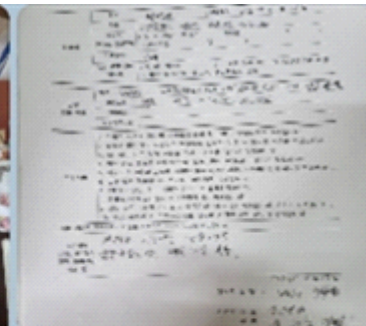
○ 입양관리카드



[개] 노퍽 테리어
암컷(중성화 X) / 엷은 황색 /
공고번호 **경북-성주-2025-00244**



노퍽 테리어
암컷(중성화 X) / 엷은 황색 /
공고번호 **경북-성주-2025-00244**



노퍽 테리어
암컷(중성화 X) / 엷은 황색 /
공고번호 **경북-성주-2025-00244**

7. 향후 추진계획

2025. 12월 : 재위탁 체결 및 운영(' 26. 1. 1. ~ ' 27. 12. 31.)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5.05.19 조례 제2574호**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5.05.19 조례 제2574호

-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따른 연평균 세출 순증가액 1억원 미만

라. 작성자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장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게 올바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대상의 편의성 및 양질의 서비스 질 제고

2. 주요내용

안 제8조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붙임)

다. 예산조치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030(2025. 5. 26.)]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6286(2025. 5. 21.)]
3) 입법예고 : 2025. 6. 11. ~ 2025. 7. 2.(21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 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 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u> <u>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u> <u>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u> <u>3. 성폭력 예방교육</u> <u>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제8조 ~ 제10조 (생 략)</u>	<u>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와 같음)</u>

관련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예산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라. 작성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 재계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위탁단체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대표 이재근)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6차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어변경(재위탁→재계약)

※ 최초(1차) : 2016. 1. 1. ~ 2017. 12. 31.(2년)

재위탁(2차) : 2018. 1. 1. ~ 2019. 12. 31.(2년)

재위탁(3차) : 2020. 1. 1. ~ 2021. 12. 31.(2년)

재위탁(4차) : 2022. 1. 1. ~ 2023. 12. 31.(2년)

재위탁(5차) : 2024. 1. 1. ~ 2025. 12. 31.(2년)

라. 위탁료 : 연 604백만원

※ 교통약자 콜택시 544백만원(국64군480),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60백만원)

마. 사무내용 : 보행이 힘든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사전예약을 통한 24시 운영 ※ 운행차량 : 9대(카니발 8대, 쏘나타 1대)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심의결과: 가결(출석위원 6명중 과반수 이상 적합 찬성)

3. 참고자료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나.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관리)

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6조(의회 동의)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가.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사무원의 임금에 따른 비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용함.
- 나.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26년도 기준

□ 특별교통수단 예산액 : **544,000천원(국 64,000 군 480,000)**

가. 인건비 : 430,654천원

- 운전원 : 2,264,200원 × 5명 × 12개월 = 135,852천원
2,146,900원 × 3명 × 12개월 = 77,288천원
- 사무원 : 2,218,700원 × 1명 × 12개월 = 26,624천원
- 시간외수당
 - 운전원 : 16,250원 × 40시간 × 8명 × 12개월 = 62,400천원
 - 사무원 : 16,250원 × 10시간 × 1명 × 12개월 = 1,950천원
- 기타수당(명절수당, 급량비, 가족수당 등) : 56,397천원
- 사회보험료 : 34,503천원
- 퇴직적립금 : 35,640천원

나. 운영비 : 113,346천원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료 등) : 21,60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단말기요금 및 사무용품비) : 3,202천원
- 차량비(차량유류대, 수리비, 부품교체비, 검사료 등) : 80,744천원
- 기타운영비 및 소모품 등 : 7,800천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예산액 : **60,000천원(군 60,000)**

가. 인건비 : 47,147천원

- 운전원 : 2,200,000원 × 1명 × 12개월 = 26,400천원
- 시간외수당 : 16,000원 × 45시간 × 1명 × 12개월 = 8,640천원
- 기타수당(명절수당, 급량비, 위험수당 등) : 5,576천원
- 사회보험료 : 3,891천원
- 퇴직적립금 : 2,640천원

나. 운영비 : 12,853천원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료 등) : 1,94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단말기요금 및 사무용품비 등) : 3,178천원
- 홍보비 : 2,000천원
- 차량비(차량유류대, 수리비, 부품교체비, 검사료 등) : 5,735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입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320,000
세출	인건비	424,110	430,654	440,000	450,000	460,000	2,204,764
	운영비	103,890	113,346	120,000	125,000	130,000	592,236
	소계(b)	528,000	544,000	560,000	575,000	590,000	2,797,000
□ 총 비용		△464,000	△480,000	△496,000	△511,000	△526,000	△2,477,000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8년	합계
세입		0	0	0	0	0	0
세출	인건비	16,771	47,147	50,000	54,000	58,000	225,918
	운영비	33,229	12,853	15,000	16,000	17,000	94,082
	소계(b)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320,000
□ 총 비용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320,000

4. 재원조달 방안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320,000
군비	464,000	480,000	496,000	511,000	526,000	2,477,000
합계	528,000	544,000	560,000	575,000	590,000	2,797,000

●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군비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32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관 련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 ④ 삭제 <2024. 2. 20.>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2023. 5. 16.>
-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개정 2023. 12. 28.>
3.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③ 군수는 수탁자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⑤ 그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3조)
 - 서면심의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근거 명시
- 안전관리에치금 기준금액 및 재산정 기준 정비(안 제18조)
 -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감소할 경우 별도 규정 없어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정비
- 가설건축물 조항 신설(안 제21조)
 - 농촌채류형쉼터, 단독주택 부지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
-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신설(안 제24조)
 -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확대
- 공개공지 관리조항 신설(안 제34조)
 -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안 제36조)
 -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축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0987(2025.6.23.)호]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991(2025.6.23.)호]

마. 입법예고 : 2025. 7. 14. ~ 8. 3. (20일간)

바. 건축위원회 심의 : 2025. 8. 4. ~ 8. 11. (원안가결)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13조 제4항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로,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을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로, “다른 예치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를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로, “예치하여야”를 “예치 또는 반환토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농막”을 “농막, 농촌체류형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독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차양시설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에 한한다)

11.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인 비가림시설(단,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등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

5. 건축분야 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군수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할 것

제35조제1항제3호 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3조의5”로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관리번호

-

공개공지 관리대장

1. 공개공지등 현황

(3쪽 중 제1쪽)

가. 위 치							
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다.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륜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물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높이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라. 공개공지 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게시설	벤 치	☐ 설치(개) ☐ 미설치		테이블	☐ 설치(개) ☐ 미설치
			파고라	☐ 설치(개) ☐ 미설치		운동기구	☐ 설치(개) ☐ 미설치
		기타시설	조 명	☐ 설치(개) ☐ 미설치		기타시설	☐ 설치((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설계도서 일치여부		☐ 일치 ☐ 불일치				
	공사감리자(확인자)		(인) / (사무소명:)				
마. 공 개 공 지 배 치 도							

2. 현황사진

(3쪽 중 제2쪽)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 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한다.

(3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 ²⁾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
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 ----- 다음 각호와 같이 수당을 ----- -----. ----- -----.
<신 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생략)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 제4항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	⑤-----

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예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⑦ (생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7. 삭 제

8.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막

9. (생략)

<신설>

<신설>

-----.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
- 예치 또는 반환토록 ---.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8. -----

농막, 농촌채류형쉼터

9. (현행과 같음)

10. 단독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차양시설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에 한한다)

11.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③ (생략)

제2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생략)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⑤
(생략)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인 비가림시설(단,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창고 등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지도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 3년 -----

4. 건축사

5. 건축분야 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
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
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유흥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
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
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단, 간이
· 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 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②
(생 략)

<신 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
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관리
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군수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
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 · 관리할 것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 영 제3조의5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말하며 이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관련법령 발췌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

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10. 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 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장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 나.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165(2025. 5. 28.)]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27586(2025. 5. 29.)]
- 마. 입법예고 : 2025. 7. 17. ~ 8. 6.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의3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수영장	1회(4시간/4레인)	200,000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매 시간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전기 및 냉난방비는 사용료에 포함
다목적실	1회(3시간)	30,000	

※ 수영장의 전용사용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경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체육행사 :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2.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자	1일 이용	월 회원	주3회 이용 월 회원	주2회 이용 월 회원	비 고
수영장	성 인	4,000	60,000	30,000	20,000	※ 1일 2시간 사용 기준
	학 생	3,000	45,000	23,000	15,000	
	경로우대자, 어린이	2,000	35,000	18,000	12,000	
헬 스	성 인	2,500	40,000	-		※ 헬스트레이너 상주
	학 생	2,000	30,000	-		※ 어린이 사용 제한
	경로우대자	1,500	25,000	-		
패키지 (수영장+ 헬스)	성 인	-	85,000	-		※ 수영장+헬스 이용료 15% 할인
	학 생	-	64,000	-		
	경로우대자	-	51,000	-		
개 인 사물함	- 사용료 4,000원/월					

○ 등록시기 및 방법(강습회원)

- 개강시기 : 매월 초
 - 신규등록 : 전월 25일~말일(등록시간 - 평일 06:30~20:30, 토요일 06:30~17:00)
 - 재 등 록 : 전월 20일~말일
 - 추가접수 : 매월 1일~5일까지(결원발생시, 전화로 사전 문의)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연기 및 환불신청 : 반드시 사전에 통보 원칙
- ※ 접수방법은 매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3. 이용료 감면 대상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 유공자 / 5.18 유공자 본인	50%	※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자녀(2자녀이상), 막내가 13세이하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10%	
여성할인(13세이상 ~ 55세 이하) (수영강습만 적용)		
그린카드 소지자		
1년 이상 회원등록(헬스강습만 적용)	5%	
6개월 이상 회원등록(헬스강습만 적용)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u><삭 제></u>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 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4조의2(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2.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5.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운영팀장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감면대상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체육활동 기회 및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9조, 별표1)
-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안 별표2)
- 다.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및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
 - : 월항 파크골프장, 성주 반다비체육센터(안 별표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27518(2025.5.29.)]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165(2025.5.28.)]
- 마. 입법예고 : 2025. 6. 10. ~ 6. 30.(2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를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 오전·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 별고을 운동장	트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6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80,000	
	필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14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160,000	
성주별고을풋살장		주 간	10,000	20,000	-	-	2시간/1면
		야 간	20,000	30,000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게 이 트 볼 장		-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남 강변 야구장	성인	-	50,000	10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리틀	-	30,000	50,000	70,000	140,000	2시간/1회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8:00까지로 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2. 이용료 : 면제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중계 방송	생방송	체육경기	40,000	60,000	20,000	40,000
		체육경기 이외	80,000	100,000	40,000	60,000
	녹화 또는 녹음	체육경기	20,000	30,000	1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	40,000	50,000	20,000	30,000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단 위	요 금	비 고
성주별고을 체육관	전광판	시 간당	10,000	
	무대 조명시설	시 간당	10,000	
음향설비	음향시설	시 간당	10,000	
	마이크(2대/기본)			
냉 · 난방		시 간당	15,000	
전기시설		시 간당	10,000	
○ 그 밖의 청소료		주최 측에서 부담 ※ 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광 고	선전물	m²/1일	10,000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1일/1개	7,000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주간	40,000	8시간/1일
		야간	60,000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6. 읍·면 파크골프장 사용료

시 설 명	사용료(1일 기준)		비 고
	성주군민	성주군민 외 사용자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무료	무료 [예약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가능 (오전 16명/오후 16명)]	36홀
성주호 파크골프장			18홀
월향 파크골프장			
수륜 파크골프장			
성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무료		9홀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별고을 파크골프장			
용암 파크골프장			
가천 파크골프장			
초전 파크골프장			

[비고]

파크골프장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며, 동절기(10월~2월)에는 09:00~18:00, 하절기(5월~9월)에는 07:00~19:00로 정한다.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100분의 50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3]

체육시설의 명칭(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성 주 별 고 을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성 주 국 민 체 육 센 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수영장, 체련단련장
건강문화캠퍼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실내체육관
국 민 체 육 센 터 (창의문화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실내체육관
성 주 생 활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 등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51-1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선 남 생 활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58-36	게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091-16 일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벽 진 생 활 체 육 공 원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파크골프장
용 파 크 골 프 안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파크골프장
수 파 크 골 프 륜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파크골프장
가 파 크 골 프 천 장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파크골프장
초 파 크 골 프 진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파크골프장
성 파 크 골 프 호 장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	파크골프장
월 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	파크골프장

파 크 골 프 장		
선 남 강 변 야 구 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성인 및 리틀야구장
대 게 이 트 볼 가 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4	게이트볼장
수 게 이 트 볼 룬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882-9	게이트볼장
벽 게 이 트 볼 진 장	경북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58	게이트볼장
초 게 이 트 볼 전 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로 413-20	게이트볼장
용 게 이 트 볼 암 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6-8	게이트볼장
수 쏫 살 룬 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평리 56-6 일원	풋살장
성 주 반 다 비 체 육 센 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홀,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으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1]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시 설 별</th><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2">체육경기</th><th colspan="2">체육경기 이외</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평 일</th><th>토·공휴일</th><th>평 일</th><th>토·공휴일</th></tr> <tr> <td rowspan="2">건강문화캠퍼스</td><td>주 간</td><td>35,000</td><td>60,000</td><td>100,000</td><td>125,000</td><td rowspan="6">※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td></tr> <tr> <td>야 간</td><td>50,000</td><td>75,000</td><td>125,000</td><td>150,000</td></tr> <tr> <td rowspan="2">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td><td>주 간</td><td>70,000</td><td>120,000</td><td>200,000</td><td>250,000</td></tr> <tr> <td>야 간</td><td>100,000</td><td>150,000</td><td>250,000</td><td>300,000</td></tr> <tr> <td rowspan="2">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td><td>주 간</td><td>21,000</td><td>36,000</td><td>60,000</td><td>75,000</td></tr> <tr> <td>야 간</td><td>30,000</td><td>45,000</td><td>75,000</td><td>90,000</td></tr> <tr> <td rowspan="2">성주별고을체육관 (야구장)</td><td>주 간</td><td>10,000</td><td>20,000</td><td>50,000</td><td>70,000</td><td rowspan="6">※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td></tr> <tr> <td>야 간</td><td>20,000</td><td>30,000</td><td>70,000</td><td>100,000</td></tr> <tr> <td rowspan="4">성주별고을운동장</td><td rowspan="2">트랙</td><td>오 전</td><td>20,000</td><td>30,000</td><td>40,000</td></tr> <tr> <td>오 후</td><td>30,000</td><td>40,000</td><td>60,000</td></tr> <tr> <td rowspan="2">필드</td><td>오 전</td><td>45,000</td><td>70,000</td><td>90,000</td></tr> <tr> <td>오 후</td><td>55,000</td><td>80,000</td><td>110,000</td></tr> <tr> <td rowspan="2">성주별고을 풋살장</td><td>주 간</td><td>10,000</td><td>20,000</td><td>-</td><td>-</td><td rowspan="2">2시간/1면</td></tr> <tr> <td>야 간</td><td>20,000</td><td>30,000</td><td>-</td><td>-</td></tr> <tr> <td rowspan="2">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경구, 족구)</td><td>주 간</td><td>15,000</td><td>30,000</td><td>20,000</td><td>35,000</td><td>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게이트볼장</td><td>-</td><td>무료</td><td>무료</td><td>무료</td><td></td></tr> <tr> <td rowspan="2">전남강변야구장</td><td>성인</td><td>-</td><td>50,000</td><td>100,000</td><td>200,000</td><td>2시간/1회</td></tr> <tr> <td>리틀</td><td>-</td><td>30,000</td><td>50,000</td><td>70,000</td><td>2시간/1회</td></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tr> </table>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야구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운동장	트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필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성주별고을 풋살장	주 간	10,000	20,000	-	-	2시간/1면	야 간	20,000	30,000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경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게이트볼장		-	무료	무료	무료		전남강변야구장	성인	-	5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리틀	-	30,000	50,000	70,000	2시간/1회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시 설 별</th><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2">체육경기</th><th colspan="2">체육경기 이외</th><th rowspan="2">비 고</th></tr> <tr> <th>평 일</th><th>토·공휴일</th><th>평 일</th><th>토·공휴일</th></tr> <tr> <td rowspan="2">건강문화캠퍼스</td><td>주 간</td><td>35,000</td><td>60,000</td><td>100,000</td><td>125,000</td><td rowspan="6">※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td></tr> <tr> <td>야 간</td><td>50,000</td><td>75,000</td><td>125,000</td><td>150,000</td></tr> <tr> <td rowspan="2">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td><td>주 간</td><td>70,000</td><td>120,000</td><td>200,000</td><td>250,000</td></tr> <tr> <td>야 간</td><td>100,000</td><td>150,000</td><td>250,000</td><td>300,000</td></tr> <tr> <td rowspan="2">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td><td>주 간</td><td>21,000</td><td>36,000</td><td>60,000</td><td>75,000</td></tr> <tr> <td>야 간</td><td>30,000</td><td>45,000</td><td>75,000</td><td>90,000</td></tr> <tr> <td rowspan="2">성주별고을체육관 (야구장)</td><td>주 간</td><td>10,000</td><td>20,000</td><td>50,000</td><td>70,000</td><td rowspan="4">※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td></tr> <tr> <td>야 간</td><td>20,000</td><td>30,000</td><td>70,000</td><td>100,000</td></tr> <tr> <td rowspan="2">성주별고을운동장</td><td rowspan="2">트랙</td><td>오 전</td><td>20,000</td><td>30,000</td><td>40,000</td></tr> <tr> <td>오 후</td><td>30,000</td><td>40,000</td><td>60,000</td></</tr></table>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야구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운동장	트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야구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운동장	트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필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성주별고을 풋살장	주 간	10,000	20,000	-	-	2시간/1면																																																																																																																																																																																																				
	야 간	20,000	30,000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경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게이트볼장		-	무료	무료	무료																																																																																																																																																																																																					
전남강변야구장	성인	-	5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리틀	-	30,000	50,000	70,000	2시간/1회																																																																																																																																																																																																				
(현행과 같음)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건강문화캠퍼스	주 간	35,000	60,000	100,000	125,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50,000	75,000	125,000	15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주 간	21,000	36,000	60,000	75,000																																																																																																																																																																																																					
	야 간	30,000	45,000	75,000	9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야구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운동장	트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현행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100분의 50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100분의 50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3]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제2조 관련)			[별표3]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기능	명칭	위치	기능
성주별고을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등	성주별고을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성주국민체육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수영장, 체련단련장	성주국민체육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수영장, 체련단련장
건강문화캠퍼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실내체육관	건강문화캠퍼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실내체육관
성주생활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테니스장, 축구장, 정구장 등	성주생활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테니스장, 축구장, 정구장 등
선남생활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 관화리1091-16 일원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51-1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벽진생활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 42-78 일원	파크골프장	선남생활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58-36	게이트볼장
성주파크골프장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51-1 일원	파크골프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1091-16 일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별고을파크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파크골프장	벽진생활체육공원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파크골프장
용암파크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파크골프장	별고을파크장 (삭제)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파크골프장
수륜파크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파크골프장	용암파크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파크골프장
가천파크장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 12-11 일원	파크골프장	수륜파크장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파크골프장
초전파크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파크골프장	가천파크장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파크골프장
성주호파크장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파크골프장	초전파크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파크골프장
선남강변야구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성인 및 리틀야구장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기능	명칭	위치	기능
대가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게이트볼장	성주호크골프장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	파크골프장
수륵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수륵면 신평리 81-1 일원	게이트볼장	월항골프장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	파크골프장
벽진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4-00-75 일원	게이트볼장	선남강변야구장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성인 및 리틀야구장
초대전트볼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게이트볼장	대가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4	게이트볼장
용암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274-23 일원	게이트볼장	수륵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수륵면 참별로 882-9	게이트볼장
수륵풋살장	경북 성주군 수륵면 신평리 56-6 일원	풋살장	벽진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58	게이트볼장
			초대전트볼장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로 413-20	게이트볼장
			용암이트볼장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36-8	게이트볼장
			수륵풋살장	경북 성주군 수륵면 신평리 56-6 일원	풋살장
			성주만다비체육센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다목적홀,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장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 이유

성주군 관내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성주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별표1)

다. 파크골프장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파크골프장 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사용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제15조, 안 별표2, 별표3)

사. 파크골프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제17조)

아.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행위의 금지, 감사 등,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제22조)

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23조 ~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206(2025. 5. 29.)]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30362(2025. 6. 18.)]
- 마. 입법예고 : 2025. 6. 10. ~ 6. 3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4. 그 밖의 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및 휴장 등)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 ~ 12: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08:00 ~ 12:00)
2. 오후 : 14:00 ~ 17: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13: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잔디생육휴장일)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매년3~4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2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2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별표3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외주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체육회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용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 유지·관리와 손실이나 분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21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제23조(준용)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주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주 소 지	비고
성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51-1번지 일원	9홀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1091-16 일원	36홀
별고을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27홀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9홀
성주참외파크골프장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4-1번지 일원	36홀
용암파크골프장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9홀
수륜파크골프장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18홀
가천파크골프장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9홀
성주호파크골프장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일원	18홀
초전파크골프장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9홀
월항파크골프장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890-1 일원	18홀

[별표 2]

성주 참외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기 준	일일 사용자	
		개 인	단 체
성주 참외 파크 골프장	평 일	5,000원	4,000원
	토,일요일,공휴일	8,000원	6,000원
비고	1. “관내 주소자”란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둔 자 말한다. 2. “일일 사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써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자는 관내,외주민 모두 “성주군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직접 결제후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7. 사용인원은 오전 36팀, 오후 36팀(팀별 4명기준, 최소 3명이상 예약 가능, 1~2명 예약 금지)으로 하며, 오전,오후별 관내 30팀,관외 6팀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8. 사전예약 취소, 당일 미결제로 인한 사용인원에 대해서는 관내,외주민 상관없이 현장에서 직접 결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9. 운영시간은 오전 08시~12시, 오후 13시~17시로 하며 사전예약은 오전 2회(08시~10시, 10시~12시)로 나누어 할 수 있고 오후는 1회로 한정한다.		

읍·면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시 설 명	사용료(1일 기준)
	관내 주소자
성 주 생 활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무료
선 남 생 활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별 고 을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벽 진 생 활 체 육 공 원 파 크 골 프 장	
용 파 크 골 프 장	
수 파 크 골 프 장	
가 파 크 골 프 장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초 파 크 골 프 장	
월 파 크 골 프 장	

※비 고: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오전 09:00~12:00, 14:00~17:00로 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감면	사용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성주군민(외국인포함)	100분의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의견제출사항

가. 의견이 있는 항목 :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나. 찬반여부 : 반

다.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에게도 성주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람.

2. 답변 내용

- 현재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2항 별표3에서 성주군에 주소를 둔 성주군민에게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의견주신 성주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에게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에게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안 제10조의 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165(2025. 5. 2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27584(2025. 5. 29.)]
마. 입법예고 : 2025. 7. 17. ~ 8. 6.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에도 시설(다목적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의3 관련)**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다목적체육관	주 간	50,000	90,000	150,000	200,000	
	야 간	80,000	120,000	200,000	250,000	
소체육관	주 간	20,000	30,000	60,000	80,000	
	야 간	30,000	40,000	80,000	100,000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1회(3시간)		무료			

※ 전용사용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로 한정한다.

- 체육경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체육행사 :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2.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자	1일 이용	월 회원	비 고
헬 스	성 인	2,500	40,000	
	학 생	2,000	30,000	
	경로우대자	1,500	25,000	
샤워실	가족샤워실	1회 3,000		
	일반샤워실	1회 1,000		
개 인 사물함	- 사용료 4,000원/월			

○ 등록시기 및 방법

- 개강시기 : 매월 초
- 신규등록 : 전월 25일~말일(등록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 재 등 록 : 전월 20일~말일
- 추가접수 : 매월 1일~5일까지(결원발생시, 전화로 사전 문의)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연기 및 환불신청 : 반드시 사전에 통보 원칙

※ 접수방법은 매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3. 사용료 감면대상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4. 이용료 감면대상

할 인 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 유공자 / 5.18 유공자	50%	※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자녀(2자녀이상), 막내가 13세이하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	10%	
그린카드 소지자		
1년 이상 회원등록	5%	
6개월 이상 회원등록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① · ② (생략)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에도 시설(다목적체육관)개방을 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설></u>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u><삭제></u>
<u><신설></u>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제10조

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4조의2(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2.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5.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의견제출사항

가. 의견이 있는 항목 : 별표1 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나. 찬반여부 : 반

다.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에게도 성주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해주기 바람.

2. 답변 내용

- 성주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도시민에게도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시 성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료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향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운영팀장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영 운영 불가
 - 소각시설 배출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소각 및 전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소각 및 전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등 배출과 상차·운반·보관·처리, 주변정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배출가스의 자가측정, 각종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위 치 : 성주읍 삼산1길 266-2 일원
- 시설용량 : [기존]소각 25톤/일
[증설]소각 40톤/일, 전처리 40톤/일 ※'26년 5월말 준공예정
- 처리공법 : 스토카방식 (24시간 연속 연소식)
- 주요시설 : 반입·공급·소각시설, 가스냉각시설, 대기방지시설, 배기시설 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예산)

- '26년 운영비 : 2,777,273천원/연
 - 기 존 시 설 : 883,511천원(5개월, '26.1.1. ~ 5.31.)
 - 증 설 시 설 : 1,893,762천원(7개월, '26.6.1. ~ 12.31.)
- '27년 이후 운영비 : 3,246,450천원/연

나. 산출근거

- '25년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원가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 분	'23년 산정	'26년 산정		'27년 이후	비 고
		기존(5개월)	증설(7개월)		
인 건 비	765,321,756	377,962,565	895,104,651	1,534,465,116	
관 리 비	163,224,372	78,344,703	173,330,930	297,438,737	
시 설 운 영 비	722,143,414	253,645,211	437,139,845	749,382,591	변 동 비
일 반 관 리 비	83,569,151	41,067,654	96,159,202	164,844,346	
이 윤	101,211,527	49,737,215	116,458,933	199,644,819	
위탁운영원가	1,835,470,220	800,757,348	1,718,193,561	2,945,475,609	
부 가 가 치 세	183,547,022	80,075,735	171,819,356	294,547,560	
보험료,기술지도 위 험 평 가	9,269,700	2,677,917	3,749,083	6,427,000	
소 계	2,028,286,000	833,511,000	1,893,762,000	3,246,450,000	
합 계	2,028,286,000	2,777,273,000		3,246,450,000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등 법적기준에 맞는 운영을 위한 고도의 환경기술이 요구되므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일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민간기관의 운영능력이 필요함

다. 경제적 효율성

- 소각시설은 유지관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 소각시설의 운영에는 대기오염 방지, 잔재물 처리, 에너지 회수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정밀한 공정 제어 능력과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소각시설은 운영성과의 정량적 지표(소각률, 가동률, 가동시간 등)를 기반으로 관리되며, 배출기준 및 운영기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위탁 운영 기간 내 성과 평가가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소각시설의 운영기준 및 배출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운영 지표는 실시간으로 측정·보고되고 있음. 또한 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및 정기적인 점검 실시,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사. 종합의견

-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확보, 24시간 안정적 가동, 운영비 절감과 기술 활용, 명확한 성과 측정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결과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6. 향후 추진 계획

- 2025. 10. :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
- 2025. 11. :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결과통보
- 2025. 12. : 위·수탁 계약

붙임 관련법령 1부.

붙임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며, 이때 발생하는 운영비의 표준원가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2021.3.)」에 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금2,777,27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군비	합 계	비 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777,273	2,777,27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세외수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 도비	-	-	-	-	-	0
	○ 군비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소계(b)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 총 비용(a-b)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777,273	3,246,450	3,246,450	-	-	9,270,173

5. 부대의견 : 시설 증설로 인한 인력증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6. 작 성 자 : 자원순환사업소 환경시설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구 분	'26년 산정		'27년 이후	비 고
	기준(5개월)	증설(7개월)		
인 건 비	377,962,565	895,104,651	1,534,465,116	
관 리 비	78,344,703	173,330,930	297,438,737	
시 설 운 영 비	253,645,211	437,139,845	749,382,591	변 동 비
일 반 관 리 비	41,067,654	96,159,202	164,844,346	
이 윤	49,737,215	116,458,933	199,644,819	
위 탁 운 영 원 가	800,757,348	1,718,193,561	2,945,475,609	
부 가 가 치 세	80,075,735	171,819,356	294,547,560	
보험료, 기술지도 위 협 평 가	2,677,917	3,749,083	6,427,000	
소 계	833,511,000	1,893,762,000	3,246,450,000	
합 계	2,777,273,000		3,246,450,000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9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운영)

○ 필요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영 운영 불가
- 방류수질 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수질검사 및 수처리 계통 일상 점검
-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통제 및 반입량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시설운영 일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위치 : 성주읍 삼산1길 266 일원
- 시설용량 : 80ton/일(분뇨30ton, 가축분뇨50ton)
- 처리공법 : BCS공법(Bio-Ceramic-System)
- 주요시설 : 전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오존처리시설 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예산) : 929,507천원/년

나. 산출근거

- '25년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원가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 분		'23년 산정	'26년 산정	비 고
인	건	454,772,472	530,703,096	
경 비	복리후생비	15,656,501	17,999,170	
	약 품 비	105,285,250	98,236,640	
	수선유지비	36,532,338	36,893,611	
	안전점검비	7,324,600	8,832,000	
	기 타 경 비	9,550,222	1,464,741	
	소 계	174,348,911	163,426,162	
원 가 합 계		629,121,383	694,129,258	
일 반 관 리 비		56,620,924	62,471,633	
이		68,574,231	75,660,089	
부 가 가 치 세		75,431,654	83,226,098	
예 지 니 어 링 존 해 배 상 공 제		12,729,025	14,020,565	
합		842,477,217	929,507,643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방류수질관리 및 혐기·호기성 소화, 탈수, 악취저감(탈취) 등의 공정에 필요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므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관내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민간 기관의 운영능력이 필요함

다. 경제적 효율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유지관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 최적의 소화효율 확보를 위한 미생물 관리, 고농도 분뇨 처리, 생물학적·화학적 탈질·탈인, 악취 저감 등 전문 운전 기술이 요구되므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공공처리시설은 정량지표(방류수질, 처리량, 가동률 등)를 기반으로 관리되며, 배출기준 및 운영기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성과 평가가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시설의 운영기준 및 방류수질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방류수 수질은 매일 측정하여 관리하고, 정기점검(도·환경부)에서 분기별 1회이상 외부 및 내부 점검을 통해 운영 방류수질기준을 검증받고, 투명성확보가 가능함

사. 종합의견

-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확보, 24시간 안정적 가동, 운영비 절감과 기술 활용, 명확한 성과 측정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결과 민간위탁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6. 향후 추진계획

- 2025. 10. :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
- 2025. 11. :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결과통보
- 2025. 12. : 위·수탁 계약

붙임 관련법령 1부.

붙임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운영)

-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연평균 세출 순증가액 1억원 미만

라. 작성자

자원순환사업소 환경시설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9. 15.(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5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봉투 기준·공급체계를 개선하며, 조례 문구와 부서명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3조)

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안 제7조)

라. 종량제봉투 공급 규정 정비(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종량제봉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의 구체화와 용어 정의 신설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청소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폐기물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감량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목적 정비(안 제1조)
- 나.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며, 용어 정의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홍보, 보조금·시설 지원,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그리고 군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안 제48조)

-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임시회의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 이행성과를 높이고,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분야에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등의 예방, 금지조치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안 제3조, 제4조)
-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5조)
-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6조)
-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
- 바. 피해 직원 보호·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8조, 제9조)
- 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안 제10조)
- 아. 비밀유지 및 허위신고 조치 (안 제11조,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예방·금지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장 내 구성원 간 존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추가(안 제6조)
- 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0조)
- 다.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안 제41조)
-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42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대리인 제도를 반영하고,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하고, 규칙에 있는 내용 일부를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주차장 조례」의 내용 반영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안 제6조 제1항 제2호)

나.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 추가

-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혜택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안 제6조 제1항 제1호)

다. 규칙 내용 일부 이관(별표 포함)(안 제6조 제3항)

라. 이관한 규칙 별표 서식에 공영주차장 감면 내용을 반영(별표 3)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 보호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당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성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문화재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출산·양육 부모 지원을 통해 인구정책을 보완하며, 군민 체감도가 높은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군민 복지와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소속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 (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다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소속 명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 가. 사 무 명 :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 운영 및 관리
- 나.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창의문화교류센터 3층)
- 다. 시설현황 : 연면적 552.55㎡ / 상영관 2개(98석, 장애인석 2석 포함)
- 라. 위탁기간 : 2025. 11. 22. ~ 2028. 11. 21. (3년간)
- 마. 위탁방법 : 재계약
- 바. 현 수탁기관 :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대표 정민화)

3. 주요 위탁조건

- 가. 관람료 사전 승인 및 상영작 구성 협의
- 나. 성주군민 우선 채용
- 다. 순수익 배분(군 40% : 수탁자 60%)
- 라. 시설·장비 원상복구 책임

마. 분기별 실적 보고 및 연간 성과보고서 제출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주 작은영화관(별고을시네마)은 성과평가 결과 84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수(70점)를 상회하였으며, 2024년 흑자 전환, 누적 관람객 약 7만 명 달성 등 운영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일·비수기 관람객 유치와 지역특화 콘텐츠 확대 등은 향후 위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안정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2025년 2월 11일 베트남 꽝남성·타이빈성·박칸성과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베트남 다낭시(꽝남성+다낭시), 베트남 홍옌성(타이빈성+홍옌성), 베트남 타이응우옌성(박칸성+타이응우옌성)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국가(지자체)간 협력 방안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유치국가	농가수 (호)	유치인원 (명)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2017	필리핀 (1개시)	11	21	-	상반기 9명, 하반기 12명
2018	필리핀 (1개시)	7	11	-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
2019	필리핀 (1개시)	7	15	-	상반기 7명, 하반기 8명
2022	필리핀 (1개시)	62	124	-	상반기만 추진
2023	필리핀 (2개시)	277	531	328%	상반기만 추진
2024	필리핀 (4개시) 라오스 (1개주)	514	932	75%	상반기 445호/837명 하반기 69호/95명
2025	필리핀 (3개시) 라오스 (3개주) 베트남 (1개성)	927	1,846	98%	상반기 697호/1,440명 하반기 230호/406명

4. 기타사항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 결과 및 경미한 변경 사항 (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시행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자,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다낭시, 흥옌성, 타이응우옌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주군은 2017년 이후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를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1,846명을 도입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협약 체결은 단순한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성주군이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 인력 수급 기반을 다지고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협력이 확산될 가능성도 기대되므로 동의안은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 법 제12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2조제1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5항(안 제11조제1항)

나. 원인자 부담금 미납 조치를 위한 납부기간 신설(안 제14조제2항)

-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비용 부과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신설하여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도시숲 조성·관리 과정에서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휴양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규정과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는데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나.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명칭 통일

다. 시설범위를 적용범위로 변경하여 휴양림 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

라. 제10조(입장 제한 등) 폐지

마.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예약 관리 강화 조항 신설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안 제12조)

- 관리자 예약(안 제13조)

- 매매·교환 등 금지(안 제14조)

- 손해배상(안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군민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방성을 높이고,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예약사항 매매·양도 금지와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여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 다만,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이나 관리자 예약의 경우 권한 남용이나 불투명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에게 공개하고, 내부 통제 및 점검 절차를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공정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일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성주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법령 :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필요성(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입양률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함.)

다. 사무내용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및 동물 입양 홍보 및 관리
- 관내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기타 성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동물보호센터(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 면 적 : 1,551m²(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개인시설 임대 : 사진자료 별첨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탁기간 : 2년(2026. 1. 1. ~ 2027. 12. 31.)

나.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현 수탁기관 : (주)독케어(대표 박명석)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과평가 결과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군 직영시설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봉사단체·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게 올바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대상의 편의성 및 양질의 서비스 질 제고

1. 주요내용

안 제8조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 재계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위탁사무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위탁단체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대표 이재근)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6차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어변경(재위탁→재계약)

※ 최초(1차) : 2016. 1. 1. ~ 2017. 12. 31.(2년)

재위탁(2차) : 2018. 1. 1. ~ 2019. 12. 31.(2년)

재위탁(3차) : 2020. 1. 1. ~ 2021. 12. 31.(2년)

재위탁(4차) : 2022. 1. 1. ~ 2023. 12. 31.(2년)

재위탁(5차) : 2024. 1. 1. ~ 2025. 12. 31.(2년)

라. 위 탁 료 : 연 604백만원

※ 교통약자 콜택시 544백만원(국64 군480),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60백만원)

마. 사무내용 : 보행이 힘든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사전예약을 통한

24시 운영 ※ 운행차량 : 9대(카니발 8대, 쏘나타 1대)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심의결과: 가결(출석위원 6명중 과반수 이상 적합 찬성)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하여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성과평가 결과도 재계약 적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3조)
 - 서면심의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근거 명시
- 안전관리에치금 기준금액 및 재산정 기준 정비(안 제18조)
 -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감소할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정비
- 가설건축물 조항 신설(안 제21조)
 - 농촌체류형쉼터, 단독주택 부지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
-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신설(안 제24조)
 -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확대

- 공개공지 관리조항 신설(안 제34조)
 -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안 제36조)
 -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신설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 행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안전관리예치금 반환 규정 신설은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설건축물 규정 확대하여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군민의 문화·체육 향유권 확대와 공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감면대상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체육활동 기회 및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9조, 별표1)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안 별표2)

다.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및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

- 월항 파크골프장, 성주 반다비체육센터(안 별표3)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편의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 이용 수요에 맞추어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신규 시설 반영과 주소 일원화를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군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 관내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성주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시설의 체계적인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별표1)

다. 파크골프장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파크골프장 시설의 개방, 개방제한, 사용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제15조, 안 별표2, 별표3)

사. 파크골프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제17조)

- 아.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행위의 금지, 감사 등,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2조)
- 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3조~제2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허가 절차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군민 편의 및 행정 투명성을 위해 사용료 징수·감면 및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군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세부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 신설(별표1)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자원봉사자 감면과 일요일·공휴일 개방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군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체육활동 권익 증진과 자원봉사 장려,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영 운영 불가
 - 소각시설 배출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소각 및 전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소각 및 전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등 배출과 상차·운반·보관·처리, 주변정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배출가스의 자가측정, 각종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위치 : 성주읍 삼산1길 266-2 일원
- 시설용량 : [기존]소각 25톤/일
[증설]소각 40톤/일, 전처리 40톤/일 ※'26년 5월말 준공예정
- 처리공법 : 스톡방식 (24시간 연속 연소식)
- 주요시설 : 반입·공급·소각시설, 가스냉각시설, 대기방지시설, 배기시설 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지방계약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민간위탁을 통해 입증되었고, 군 직영으로는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의한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 12월 31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성주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조례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민간위탁의 기준)
-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운영)

- 필요성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영 운영 불가
- 방류수질 농도관리를 위한 필수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수 요구
- 법적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전문 운전·관리 기술이 필요

다. 사무 내용

-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보수
- 수질검사 및 수처리 계통 일상 점검
-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통제 및 반입량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고
- 시설운영 일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위 치 : 성주읍 삼산1길 266 일원
- 시설용량 : 80ton/일(분뇨30ton, 가축분뇨50ton)
- 처리공법 : BCS공법(Bio-Ceramic-System)
- 주요시설 : 전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오존처리시설 등

3. 위탁기간 및 선정방식

가. 위 탁 기 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환경부 지침 + 지방계약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민간위탁을 통해 입증되었고, 군 직영으로는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위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예정인 성주군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가동될 경우에는 시설 운영체계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위탁기간 조정 및 연계 운영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분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